

의안번호	2209937
의 퇴 인	신영대 의원
회 답 일	2025. 9. 12.
추계번호	25F240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,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
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 세액공제 신설 등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국가전략기술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이하 ‘R&D 세액공제’)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35년말까지 연장하는 등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31년 5,923억원, 2036년 1조 3,807억원 등 2031년부터 2036년까지 6년간 총 6조 3,504억원(연평균 1조 58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, 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및 환급권리의 제3자 양도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해당 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31~2036년

(단위: 억원)

	2031	2032	2033	2034	2035	2036	누적	연평균
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조제1항)	-5,611	-5,897	-11,565	-12,327	-12,955	-13,616	-62,298	-10,383
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외 분야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6년 연장(안 제24조제1항제2호)	-312	-325	-338	-352	-367	-382	-2,076	-346
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(안 제100조의35 신설)	추	정	곤	란				
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(안 제144조의2 신설)	추	정	곤	란				
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권리의 양도특례 신설(안 제144조의3 신설)	추	정	곤	란				
계	-5,923	-6,222	-11,903	-12,507	-13,141	-13,807	-63,504	-10,58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 R&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한: (반도체 외 국가전략기술) 2029.12.31. → 2035.12.31. (반도체 기술) 2031.12.31. → 2035.12.31.	
2	안 제24조제1항제2호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 반도체 기술을 제외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등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한: 2029.12.31. → 2035.12.31. ※ 반도체의 경우, 현행 적용기한(2029.12.31.) 유지	
3	안 제100조의35 (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신설 - 공제대상: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-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의 요건: ①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조한 재화 ②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재화 ③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된 재화 - 공제율: 제품 생산비용의 15% - 공제한도: 해당연도 기업의 법인세·소득세의 20% - 적용기한: 2035.12.31. ※ 미공제분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	
4	안 제144조의2 (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환급 특례)	○ 국가전략기술사업에 투자한 기업이 과세연도에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법인세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R&D 세액공제 등의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- 환급대상: 국가전략기술사업에 투자한 기업 중 결손 등으로 다음 세액공제에서 미공제 금액이 발생한 기업 ※ R&D 세액공제, 통합투자세액공제,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 세액공제 - 공제율(%): (중소·중견) '26년 50 → '27~'28년 70 → '29~'30년 100 (초기투자기업) '26년 50 → '27년 이후 100 (그 외 기업) '26년 30 → '27~'28년 50 → '29~'30년 70 - 적용기한: 2035.12.31.	
5	안 제144조의3 (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미공제 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)	○ 국가전략기술사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2	안 제24조제1항제2호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	
3	안 제100조의35 (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)	×	○ 국가전략기술사업 제품에 대한 범위 등 규정의 미비와 생산비용 규모 등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
4	안 제144조의2 (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환급 특례)	×	○ 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미공제금액 발생 규모를 추정할 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환급 및 제3자 양도 특례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
5	안 제144조의3 (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)	×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현행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감안하여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31년부터 발생

-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외 분야에 대한 R&D 세액공제와 사업화시설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, 2030~2035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 신고는 2031~2036년에 신고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31~2036년간 발생
- 반도체 분야에 대한 R&D 세액공제는 현행 2031년 귀속소득까지 적용됨에 따라 개정안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33~2036년간 발생
 - 단, 반도체 분야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현행과 같이 2029년에 종료되며, 세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음

-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-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~2024년 기술별·기업규모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실적 및 2025년 세액공제 실적(잠정치)을 활용
 - 단, 2025년 실적의 경우, 공제액 총액정보만 활용 가능하여 기술별·기업규모별 비중은 2023~2024년의 합산실적의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
 -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와 그 외 분야의 공제액 비중은 연구개발세액 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심의금액의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
 - 2025년 2월 세법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와 그 외 분야의 공제율과 적용기한이 각각 다르게 적용
 -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2022~2024년간 연구개발 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분야별로 심의를 통과한 R&D와 시설 투자 금액의 비중이 R&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동일하게 반영된다고 가정
 - ※ 2022년부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우대 공제가 시행
 -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각각 국회예산정책처의 향후 명목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 및 명목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¹⁾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 -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한 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, 해당 R&D 비용에 대해서는 일반 R&D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가정하에, 국가전략기술 R&D와 일반 R&D의 공제율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 - 현행 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한 R&D 세액공제는 2029년말까지 적용기한이 규정되어있어 2031년 이후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,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우대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신성장·원천기술이 아닌 일반기술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
 -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, 해당 시설투자에 대하여 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가정하에, 신성장·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사이의 공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 - 현행 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2031년 이후에도 적용

1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5년 NABO 경제전망: 2024~2028」, 2024.10.

-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
-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
 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&D·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에 따라 기업의 R&D 및 시설투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,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
- 이외에도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및 환급권리의 양도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합리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
 -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제품의 인정범위, 생산기업의 세액 및 생산비용 등을 추정해야 하나, 생산비용 산정방식 등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및 환급권리의 양도특례 신설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하여 향후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비가 발생한 기업의 미공제금액 발생 규모 등을 파악해야 하나, 미공제금액 계산방식 등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(제도 개요) R&D 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, 기업규모별·기술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

- 현행 기업이 2029년말(반도체 분야는 2031년말)까지 국가전략기술에 지출한 R&D 비용에 대하여 일반 또는 신성장·원천기술의 R&D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
 - (공제율)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당기분 기준 중소기업 40%, 대기업 및 중견기업 30%
 - (적용기한)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분야 2031.12.31.
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외 분야 및 신성장·원천기술 2029.12.31.
 -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&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분야에 상관없이 2035년말까지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적용기한: (반도체 분야) 2031.12.31., (반도체 분야 외) 2029.12.31. → 2035.12.31.
- ※ 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현행(2029.12.31.)과 동일

[표 2] R&D 세액공제의 공제율(당기분 기준) 및 적용기한

(단위: %)

	공제율			적용기한	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현행	개정안
일반	최대 2 ¹⁾	8 ²⁾	25	- (계속 적용)	좌동
신성장·원천기술	20	20 ²⁾	30	2029.12.31.	좌동
국가전략기술	30	30 ²⁾	40	(반도체) 2031.12.31. (반도체 외) 2029.12.31.	2035.12.31.

주: 1) 일반기업의 당기분 공제율은 '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비중 × 1/2' 로 계산함

2) 중소기업에서 졸업한 기업의 경우, 일정기간 동안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

(일반기술: 졸업 후 3년간 20%, 이후 2년간 15%, 신성장·원천기술: 졸업 후 3년간 25%,

국가전략기술: 졸업 후 3년간: 35%)

- (공제실적) 2023년 및 2024년 R&D 세액공제의 법인세 실적은 각각 4조 5,221억원, 2조 8,560억원으로, 기업규모별·기술별 공제실적은 다음과 같음
- 한편, R&D 세액공제의 소득세를 포함한 실적은 2023년 4조 6,302억원, 2024년 2조 9,575억원 수준

[표 3] 기술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실적(법인세): 2023년 및 2024년 신고 기준
(단위: 억원)

	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2023 신고	일반	14,852	2,886	6,023	23,760
	신성장·원천기술	266	255	8,971	9,492
	국가전략기술	32	9	11,927	11,968
	계	15,150	3,150	26,920	45,221
2024 신고	일반	13,150	950	5,614	19,714
	신성장·원천기술	195	562	5,407	6,164
	국가전략기술	54	99	2,529	2,682
	계	13,398	1,611	13,550	28,560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5년 공제실적(잠정치)은 4조 1,473억원으로 2024년 대비 40.2% 증가

(2) 추계방법

□ (향후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공제액 전망치) 2025년 잠정실적을 연구개발세액 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구분한 후,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(2024.10.)에 따라 공제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전망

-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액의 분야별 비중은 2022~2024년간 연구개발 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R&D 비용의 분야별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－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는 기업의 개별 R&D 지출 및 시설투자가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며, 2022년 7월 기존 신성장·원천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 심의까지 담당하도록 확장 개편
 - － 연간 4회 개최
 - － 2022년부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심의는 제4차(2022년 12월) 심의회부터 시작됨
- 2022~2024년간 연구개발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R&D 비용은 총 6,799억원으로, 이 중 반도체 분야의 비중은 46.4% 수준
 - － 기간 중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인정받은 R&D 비용 및 비중은 다음과 같음

[표 4]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현황: 2022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전체	반도체	이차전지	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	수소	디스플레이
R&D 금액	6,799	3,155	2,875	704	43	22
(분야별 비중)	(100.0)	(46.4)	(42.3)	(10.4)	(0.6)	(0.3)

자료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3~2024년간 기술별 합산 공제실적 비중을 바탕으로 2025년 잠정실적을 기술별로 구분하면, 국가전략기술의 공제규모는 8,046억원 수준으로 대부분 대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
 - 기술별 비중(%): 일반 58.9, 신성장·원천기술 21.2, 국가전략기술 19.9
 - 기업규모별 비중(%): (국가전략기술) 중소기업 0.6, 중견기업 0.7, 대기업 98.7

[표 5] 기술별·기업규모별 R&D 세액공제 추정치

(단위: 억원, %)

		2023년	2024년	합산(비중)	2025 (합산비중×41,473억원)
기술별	일반	23,760	19,714	43,474 (58.9)	23,877
	신성장원천기술	9,492	6,164	15,656 (21.2)	8,599
	국가전략기술	11,968	2,682	14,650 (19.9)	8,046
		2023년	2024년	합산(비중)	2025 (합산비중×8,046억원)
국가전략 기술내 기업규모별	중소기업	32	54	86 (0.6)	47
	중견기업	9	99	109 (0.7)	60
	대기업	11,927	2,529	14,456 (98.7)	7,939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2~2024년간 국가전략기술의 기술분야별 심의현황을 반영하여, 반도체와 반도체 외 분야를 구분하여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
 - 기술분야별 비중: 반도체: 46.4%, 반도체 외 53.6%

[표 6] 기술분야별 R&D 세액공제 추정치

(단위: 억원)

		2025년 추정치	기술분야별 비중	
			반도체(46.4%)	반도체 외(53.6%)
국가전략 기술내 기업규모별	중소기업	47	22	25
	중견기업	60	28	32
	대기업	7,939	3,684	4,255
	계	8,046	3,734	4,312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의 시차(1년)를 고려하여 t년의 공제액은 t-1년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
 - 단, 2033년 이후 투자증감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(5.1%)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전망

[표 7] 국가전략기술의 기술분야별 R&D 세액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, %)

<국가전략기술>	2025	...	2031	2032	2033	2034	2035	2036
반도체	3,734		5,232	5,499	5,779	6,074	6,384	6,709
- 중소기업	22		31	32	34	36	37	39
- 중견기업	28		39	41	43	45	47	50
- 대기업	3,684		5,162	5,426	5,703	5,993	6,299	6,620
반도체 외	4,312		6,043	6,351	6,675	7,015	7,373	7,749
- 중소기업	25		35	37	39	41	43	46
- 중견기업	32		45	47	49	52	55	57
- 대기업	4,255		5,963	6,267	6,586	6,922	7,275	7,646
계	8,046		11,275	11,850	12,454	13,090	13,757	14,459
명목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감율 전망(t-1)	6.0		5.4	5.1	5.1	5.1	5.1	5.1

주: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감율은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 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1년전 값을 적용

- (세수효과)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일반 R&D 공제율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-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한 공제율 특례가 종료될 경우, 해당 R&D는 일반 R&D 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가정
 -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한 공제율 특례의 종료기간이 반도체는 2031년말, 반도체 외 분야는 2029년말임을 반영하면, 세수효과는 반도체는 2033년부터, 반도체 외 분야는 2031년부터 발생

[표 8]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공제액 변화

(단위: 억원)

		2031	2032	2033	2034	2035	2036
반도체	일반 R&D 공제율 기준 (A)	-	-	413	434	456	479
	국가전략 공제율 기준 (B)	-	-	5,779	6,074	6,384	6,709
	차이 (B-A)	-	-	-5,366	-5,640	-5,928	-6,230
반도체 외	일반 R&D 공제율 기준 (A)	432	454	477	501	527	554
	국가전략 공제율 기준 (B)	6,043	6,351	6,675	7,015	7,373	7,749
	차이 (B-A)	-5,611	-5,897	-6,198	-6,514	-6,847	-7,196

주: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31년말까지임에 따라, 세수효과는 2033년부터 발생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-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&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반도체 분야는 2031년말에서 2035년말로, 반도체 외 분야는 2029년말에서 2035년말로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·소득세는 2031년 5,611억원, 2036년 1조 3,616억원 등 2031년부터 2036년까지 6년간 총 6조 2,298억원(연평균 1조 38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·소득세, 2026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31	2032	2033	2034	2035	2036	누적	연평균
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조제1항)	-5,611	-5,897	-11,565	-12,327	-12,955	-13,616	-62,298	-10,383

나.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외 분야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6년 연장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□ (제도 개요)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반 및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

- 현행 국가전략기술은 ‘반도체, 배터리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’ 등 7개 분야의 62개 기술 등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본 15~25%의 공제율을 적용하며,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는 투자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(4%)를 적용함
 - －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대비 당기분 12~13%p, 증가분 1%p 우대
 - 일반 투자 대비 당기분 14~15%p, 증가분 1%p 우대
-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외 분야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적용기한을 2029년말에서 2035년말까지 6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[표 10]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 공제율 및 적용기한

(단위: %)

	공제율			적용기한	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현행	개정안
일반기술	1	5	10	—	—
신성장·원천기술	3	6	12	—	—
국가전략기술(반도체외)	15	15	25	2029.12.31.	2035.12.31.
국가전략기술(반도체)	20	20	30	2031.12.31.	좌 동

- (공제실적) 2023년 및 2024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법인세 실적은 각각 1조 9,763억원, 1조 6,424억원으로, 기업규모별·기술별 공제실적은 다음과 같음
- 한편,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소득세를 포함한 실적은 2023년 2조 798억원, 2024년 1조 7,693억원 수준

[표 11] 기술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(법인세): 2023년 및 2024년 신고 기준
(단위: 억원)

	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2023 신고	일반	4,422	1,477	5,581	11,480
	신성장원천기술	29	10	3	42
	국가전략기술	0.1	0.1	8,241	8,241
	계	4,451	1,487	13,825	19,763
2024 신고	일반	4,662	2,094	8,798	15,554
	신성장원천기술	17	1	219	236
	국가전략기술	66	50	517	633
	계	4,746	2,144	9,534	16,424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5년 공제실적(잠정치)은 2조 4,204억원으로 2024년 대비 47.4% 증가

(2) 추계방법

□ (향후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공제액 전망치) 2025년 잠정실적을 연구개발 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구분한 후,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(2024.10.)에 따라 공제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전망

-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의 분야별 비중은 2022~2024년간 연구개발 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설비투자의 분야별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－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는 기업의 개별 R&D 지출 및 시설투자가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며, 2022년 7월 기존 신성장·원천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 심의까지 담당하도록 확장 개편
 - － 연간 4회 개최
 - － 2022년부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심의는 제4차(2022년 12월) 심의회부터 시작됨
- 2022~2024년간 연구개발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설비투자는 총 75조 2,219억원으로, 이 중 반도체 분야의 비중은 93.6% 수준
 - － 기간 중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인정받은 설비투자 및 비중은 다음과 같음

[표 12]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현황: 2022~2024년
(단위: 억원, %)

	전체	반도체	이차전지	디스플레이	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	기타
설비투자	752,219	704,113	30,463	16,759	454	430
(분야별 비중)	(100.0)	(93.6)	(4.0)	(2.2)	(0.06)	(0.06)

자료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3~2024년간 기술별 합산 공제실적 비중을 바탕으로 2025년 잠정실적을 기술별로 구분하면, 국가전략기술의 공제규모는 5,833억원 수준으로 대부분 대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
 - 기술별 비중(%): 일반 75.1, 신성장·원천기술 0.8, 국가전략기술 24.1
 - 기업규모별 비중(%): (국가전략기술) 중소기업 0.8, 중견기업 0.6, 대기업 98.7

[표 13] 기술별·기업규모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추정치
(단위: 억원, %)

		2023년	2024년	합산(비중)	2025 (합산비중×24,204억원)
기술별	일반	11,480	15,554	27,034 (75.1)	18,181
	신성장원천기술	42	236	279 (0.8)	190
	국가전략기술	8,241	633	8,874 (24.1)	5,833
		2023년	2024년	합산(비중)	2025 (합산비중×5,833억원)
국가전략 기술내 기업규모별	중소기업	0.1	66	66 (0.8)	44
	중견기업	0.1	50	50 (0.6)	33
	대기업	8,241	517	517 (98.7)	5,757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2~2024년간 국가전략기술의 기술분야별 심의현황을 반영하여, 반도체와 반도체 외 분야를 구분하여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
 - 기술분야별 비중: 반도체: 93.6%, 반도체 외 6.4%

[표 14] 기술분야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추정치

(단위: 억원)

		2025년 추정치	기술분야별 비중	
			반도체(93.6%)	반도체 외(6.4%)
국가전략 기술내 기업규모별	중소기업	44	41	3
	중견기업	33	31	2
	대기업	5,757	5,389	368
	계	5,833	5,460	373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향후 공제액 전망치)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외 분야의 2025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(2024.10.)에 따라 향후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

-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의 시차(1년)를 고려하여 t년의 공제액은 t-1년의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
 - 단, 2033년 이후 투자증감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(4.1%)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전망

[표 15] 국가전략기술의 반도체 외 기술분야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, %)

<국가전략기술>	2025		2031	2032	2033	2034	2035	2036
반도체 외	373		490	510	531	552	575	599
- 중소기업	3		4	4	4	4	4	4
- 중견기업	2	...	3	3	3	3	3	3
- 대기업	368		483	503	524	545	568	591
명목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(t-1)	5.8		4.1	4.1	4.1	4.1	4.1	4.1

주: 설비투자 증감율은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 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1년전 값을 적용

□ (세수효과) 현행 및 개정안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의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- 현행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해당

투자는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가정하여,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정

- 2026년(징수기준) 이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(%):
(현행) 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한 공제율 적용: 대기업 3, 중견기업 6, 중소기업 12
(개정안)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외 분야에 대한 공제율 적용: 대기업 15, 중견기업 15, 중소기업 25
- 세수효과 추정시 농어촌특별세 과세분(20%)을 반영하여 추정

[표 16]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외 분야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세수효과 추정치
(단위: 억원)

		2031	2032	2033	2034	2035	2036
투자세액 공제액	현행(A)	490	510	531	552	575	599
	개정안(B)	100	104	108	112	117	122
	차이 (C=A-B)	-390	-406	-423	-440	-458	-477
세수효과 ($C \times [1 - 0.2]^{1)}$)		-312	-325	-338	-352	-367	-382

주: 1)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(3) 추계결과

-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외 분야의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말에서 2035년말까지 6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31년 312억원, 2036년 382억원 등 2031년부터 2036년까지 6년간 총 2,076억원(연평균 34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31~2036년

(단위: 억원)								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외 분야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6년 연장 (안 제24조제1항제2호)	-312	-325	-338	-352	-367	-382	-2,076	-346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